

서울특별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설 명

교통위원회 정진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제6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과 환경수자원위원회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 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도심권에 위치한 음식물자원화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근 대단위 공동주택단지 거주 지역주민들과 주변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유·초·중등 학생들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고통은 인내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악취방지시설을 개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은 막대하여 개별 사업자가 즉시 자체 부담하여 신속히 개선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조례안은 다음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악취방지법」 제7조 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종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서울시로 하여금 지원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하고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악취방지법」 제7조 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이번 조례로 정하여 지역주민이 악취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의원과 여러 동료·선배의원님들과 함께, 악취방지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으로 지역주민들의 공공복리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본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발의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